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25호

2024. 3. 2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6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4-7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483호 2024년 삼척시 도시지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 6
- 삼척시 공고 제2024-495호 2024년 임업직불사업 신청안내 공고 ----- 21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4-6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426-54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5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426-54	20240320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불천리 108-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고포불천길 259	20240320	신규 부여	20090710	지역명칭 반영
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4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길 455-35	20240320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고시 제2024-7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2.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68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등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4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681	20240322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 위치활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6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2길 59 (오분동)	20240322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오분길분기)
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247-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553	20240322	신규 부여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7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23	20240322	신규 부여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1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06	20240322	신규 부여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4 - 483호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삼척시 성내지구 및 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의 주민·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 등 역량 강화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삼척시장

1. 공모개요

- 공 고 명 :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접수기간 : 2024. 4. 11.(목) ~ 4. 17.(수) 18:00까지
- 대 상 지 : 성내지구 및 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
- 지원규모 : 최대 5팀 / 팀당 최대 6,000천원 / 자부담 10%
 - ※ 총 사업비 30,000천원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 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생활기반(사업자 등)을 둔 사업자
 - 도시재생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단체(임의 단체 포함)
- 공모내용 : 사업대상지 내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복지·주거·문화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자율 공모
 - ※ 제외 대상 : 주민회 등 단체 또는 개인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지원 분야(예시)

분야	사업 예시	내 용
사회적 재생	공동체 결성·운영	○ 마을 봉사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체 결성 및 운영
	세대 공감 프로그램	○ 세대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스토리텔링	○ 지역 역사 스토리 정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 주민참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경제적 재생	창업 아카데미	○ 청년 등 지역 창업 유도 프로그램
	마을기업 활성화	○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아이템 개발
	공가 활용 프로그램	○ 지역 공가 조사 및 활용 사업
	지역 행사 기획	○ 지역특성 반영된 소규모 행사 기획·운영 (단순한 일회성 행사 제외)
물리적 재생	노후 시설 정비	○ 가로 환경 정비 ○ 테마 가벽 설치 등
	지역특성화 시설 정비	○ 소규모 지역자원 활용 공간 조성
	도시재생 모니터링	○ 보행 환경 등 지역을 개선 방안 제시 등

※ 위 제시된 사업 이외에도 공모대상에 부합한 사업이면 공모 신청 가능

2. 추진일정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및 선정
'24.3.18.(월) ~4.17.(수)	'24.4.11.(목)	'24.4.11.(목) ~4.17.(수)	'24.4.18.(목) ~4.23.(화)
보조금 집행 및 예산 교육	보조금 교부	공모사업 실행	결과보고 및 정산
'24.4.25.(목)	'24.5월 중	'24.5월 중 ~10.31.(목)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4. 4. 11.(목) 예정
- 장 소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어울림플랫폼) 2층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취지, 진행 절차, 진행내용 등에 관한 설명
 - 구비서류 및 작성 방법 안내 등
 - 사업신청서, 예산내역 등의 검토 및 수정 보완 사항 전달
 - 사업 아이템, 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컨설팅 진행 등

□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1.(목) ~ 4. 1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삼척시 성내길 1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도시재생대학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식 :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별첨 참조)

□ 제안사업 심사

- 서류심사(1차)
 - 제출 서류 구비 및 중복지원 여부 등 공모서류 기본여건 검토
 - 사업 취지의 적합성 및 예산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 결격사유 포함 시 1차 서류에서 탈락
- 본 심사(2차)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3인 이내 구성 후 심사기준에 맞춰 평가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등) 및 기대효과(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4. 4. 23.(화) 예정
- 결과발표 : 개별통보

□ 보조금 사용 교육

- 일 시 : 2024. 4. 25.(목) 예정
- 장 소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어울림플랫폼) 2층
- 주요내용 : 예산집행 및 정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법 등의 교육

3.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 모임 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 동일주체에 대한 동일 사업 및 기존 보조금(국/도/시) 지원받는 사업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선출직 후보 포함)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사업
-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무관한 영리목적 사업
-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함.
- 선정사업의 대표제안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및 실무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 보조사업비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협력 카드사의 '보조사업비 체크 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심사, 보조금심의, 컨설팅에서 나온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 실행
- 선정사업의 제안자 및 단체는 강사, 자문, 원고작성, 회의참석, 활동비 등 수당 수급 불가

- 사업 기획 과정에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신청자(팀) 우선 선발
- 공모사업 기획·신청·진행 과정에서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 등은 서류심사에서 탈락 또는 교부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 및 사업이 중지 될 수 있음
 -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집행 금액 환수처리
 -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능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 법령·조례 위반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 기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 의 처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33-576-0326/575-8049)
- 삼척시 전략사업과 (☎033-570-4043)

<첨부2>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4.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5. 예산계획

1) 현물 및 재능활용계획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2) 비목별 예산 계획

구분	예산비목	금액(원)	산출내역
합계			
보조금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자부담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3) 월별 예산집행계획

구분	합계	월	월	월	월	월
보조금						
자부담금						
계						

6. 사업의 기대효과

-
-
-

7.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치도	

<첨부3> 단체일 경우 작성 제출

단체소개서

단체명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전화 : _____ • 인터넷홈페이지 : _____ • FAX : _____ • E-mail : _____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지원근거 개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1. 8. ○○○ 창립 • '17.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19. 7. 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_____명(사무국장, 부장 _____명, 과장 _____명, 사무직원 _____명 등 기재)
전년도 예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_____백만원(보조금 _____, 자체수입 _____)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_____%), 기부금(_____%), 보조금(_____%), 사업수익(_____%), 기타(_____%)
전년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금년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전년도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 전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또는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서술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법질서확립 추진 주민의식 강좌 운영

- 추진기간 : '○○. ○월 ~ ○월
- 운영실적 및 참석인원 : 3회 300명(일반시민 200, 단체회원 100등으로 기재)
- 소요금액 : 10백만원(보조금 7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내용

○

○

□ 해당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해당년도에 단체 자체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의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여권 신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추진기간 : . 월 ~ . 월
- 운영계획 : 3회 300명(일반시민 200, 단체회원 100등으로 기재)
- 소요금액 : 10백만원(보조금 7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내용 :

○

○

○

<서식 2>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 서명부

사업 명칭	
사업 기간	
참여 기관	
주최·주관	삼척시·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 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담당 직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서식 3〉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민원신청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연락불가로 인한 자료 제공 불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증빙자료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 참여자 개별동의

순번	성 명	동의 여부	확인일자	서 명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서식 4>

이행각서

상기 본인(_____)은 삼척시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추진하는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이익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삼척시·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삼척시장 귀하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접수기간

2024년 4월 11일(목) ~ 4월 17일(수) 18:00까지

공모내용

사업대상지 내 생활환경 개선, 경제·복지·주거·문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자율 공모

사업설명회 2024년 4월 11일 (목) 14:00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모여락' 2층

사전컨설팅 2024년 4월 2, 4일(화, 목) ◇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 14:00
 ◆ 개별 컨설팅 : 상시

대상지역 성내지구, 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

신청자격 삼척시 내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

접수처 방문접수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모여락' (성내길 18)

신청서식 QR코드 접속 후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게시글 참조

문의사항 *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033-576-0326/575-8049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접속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삼척시청 공고 제2024-495호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삼척시장

-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4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 임업직불금은 '19.4.1.부터 '22.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 국유림 및 공유림
-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 (육림업) 벌채 후 조립을 하지 않은 산지
-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과중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①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①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임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②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p>❶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면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p> <p>❷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p>	
<p>❶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p> <p>❷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p> <p>❸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p> <p>❹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p> <p>❺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p>	<p>❶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할</p> <p>❷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p>

다.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o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업인	농업법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o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업인	농업법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라.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 임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❶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❷~❹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를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들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4.1.1~23.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설계도서·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❷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❶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❷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단, 계약기간이 '24.9.29일 이전인 경우에는 '24.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분	제출서류
<p>5. 승계대상자 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p> <p>▶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p> <p>❶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p> <p>➢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p> <p>❷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p> <p>➢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지와 농촌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p>
<p>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p> <p>❶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p> <p>❷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p> <p>【증명방법】</p> <p>➢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p> <p>➢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p> <p>*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p> <p>▶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p> <p>❶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p> <p>❷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p> <p>【증명방법】</p> <p>➢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p> <p>➢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p> <p>➢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p> <p>➢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도)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p> <p>*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p> <p>*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p>

구 분	제출서류
<p>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p> <p>※ 해당자 필수</p>	<p>▶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숲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❷ 초분류, 관목류, 참나무류 음썩 등 하층식생 정리 ❸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❹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p>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p> <p>공통필수</p>	<p>▶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p> <p>▶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p>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p> <p>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명 ❷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❸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o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 (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입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입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